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4호, 2024. 12. 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2355

부칙 <제694호,2024.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료검사 및 재검사의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료 검사 또는 사료의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8.>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구 분	시 설 별	시 설 기 준
1. 양축용 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를 포함한다)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저장시설	1) 주원료와 부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다. 분쇄시설	분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배합시설	주 배합기와 예비 배합기를 각각 설치하되, 생산능력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일 것
	마. 계량시설	각 원료 및 제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각각 갖출 것
	바. 정선시설	제조 과정에서 쇠붙이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철 및 정선설비를 갖출 것
	사. 먼지제거시설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갖출 것
	아. 포장시설	제품 단위별로 봉합할 수 있는 반자동 이상의 봉합설비를 갖출 것. 다만, 산물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수송장치	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출 것
	차. 작업공장	일관작업(一貫作業)을 할 수 있는 반자동 또는 완전자동 설비일 것
2. 대용유용 배합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배합시설 라. 계량시설 마. 정선시설 바. 먼지제거	양축용 배합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시설 사. 포장시설	
	아. 분쇄시설	곡물 분쇄설비를 갖출 것
3. 섬유질 배합사료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적합할 것
	나. 저장시설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다. 혼합시설	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할 것
	라. 계량시설	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마. 포장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바. 수송장치	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출 것
4.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배합시설 라. 계량시설 마. 정선시설 바. 포장시설	양축용 배합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사. 분쇄시설	분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비고

1) 삭제 <2015.1.2.>

2) 양축용 배합사료제조업자가 판매용 프리믹스용 배합사료를 제조할 경우에는 양축용 배합사료제조시설과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저장시설·배합시설·계량시설·정선시설·먼지제거시설·포장시설·수송장치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3) 배합사료제조업자는 제조공정 또는 포장방법의 특성상 일부 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일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1.2.>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시 설 별	시 설 기 준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저장시설	1)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출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출 것 3) 원료와 부형제(賦形劑)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설비를 갖출 것
다. 분쇄 및 혼합 시설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를 갖출 것
라. 배양시설	미생물 배양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미생물을 이용하는 사료만 해당한다)
마. 계량시설	원료와 제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갖출 것
바. 포장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비고

1) 요소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갈음한다.

2) 보조사료 제조업자는 제조공정 또는 포장방법의 특성상 일부 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일부 시설을 갖추지 아니 하거나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보조사료를 생산할 경우에는 시설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2. 5.>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구분	사료종류	시설별	시설기준
식물성	1. 곡류 및 강피류(糠皮類)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2. 식물성 박류(植物性 粕類)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및 「주세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3. 농축단백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4. 서류(薯類)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5. 당밀, 원당, 파당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에 따름(파당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 수송장치 · 혼합시설 및 정제시설 등 제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6. 제과 · 제빵 · 제면의 부산물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적합할 것
		나. 저장시설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다. 계량시설	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포장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마. 수송장치*	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출 것
		바. 건조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설비를 갖출 것
		사. 분쇄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분쇄설비를 갖출 것
		아. 혼합시설*	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할 것
		자. 먼지제거시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갖출 것
	7. 아미노산 발효부산물 및 조미료부산물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바. 악취제거시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없앨 수 있는 설비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갖출 것
		사. 정수시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수하여 배수할 수 있는 설비를 「하수도법」에 따라 갖출 것
	8. 콩류가공부산물	가. 공장건물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비지 포함)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건조시설* 사. 분쇄시설	
9. 기타 식품가공부산물류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0. 조류(藻類)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건조시설* 사. 분쇄시설* 아.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1. 섬유질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2. 섬유질가공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3. 섬유질발효사료	가. 공장건물 나. 계량시설 다. 포장시설 라. 수송장치 마.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바. 저장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

		장설비를 갖출 것 2) 탈수한 전분박(澱粉粕)의 저장설비에는 뚜껑을 갖출 것
	사. 탈수시설*	생산능력에 알맞은 탈수시설을 할 것
14. 제약부산물류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바. 악취제거시설* 사. 정수시설*	제7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5. 식물성유지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16. 전분류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적합할 것
	나. 저장시설	1)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실내 저장설비를 갖출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실내 저장설비를 갖출 것 3) 생산공정 중에 필요한 중간원료와 부형제(浮衡劑)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설비를 갖추되, 제품 생산에 적합한 저장능력을 설비를 갖출 것
	다. 계량시설	일정 단위로 포장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갖추되, 생산능력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라. 포장시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적정량 단위의 포장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마. 정수처리시설*	전분을 물과 혼합하여 정제수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원료투입 및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바. 용해 및 여과시설	전분을 물과 혼합하여 전분유액을 만들 수 있는 설비와 전분유액을 여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사. 알파화시설	전분유액을 알파화시킬 수 있는 건조기설비와 이를 순간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스팀공급설비를 갖출 것
	아. 분쇄 및 체별	수요자가 요구하는 평균 입도(粒度)에

		시설	맞게 분쇄 · 체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생산능력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17. 콩류, 견과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기타 식물류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동물성	18. 도축 및 가금도축 부산물, 수지박(우지박, 돈지박을 포함한다), 육가공 부산물, 육분, 육골분, 육즙흡착사료, 혈분(혈액을 이용한 가공품을 포함한다)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삶는시설 바. 압착시설 사. 고형분리시설* 아. 유수분리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파.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다만, 삶는 시설은 육골분의 경우 140℃에서 1시간 이상, 혈분의 경우 135℃에서 10분간 가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19.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	혼합한 각각의 동물성단백질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18호, 제20호, 제21호, 제23호의 제조시설 외에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혼합시설을 갖출 것	
	20. 모발분, 우모분, 제각분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압착시설 마. 고형분리시설* 바. 건조시설 사. 분쇄시설 아. 먼지제거시설 자. 악취제거시설 차.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타. 삶는시설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삶는 설비를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출 것
	21. 새우분, 어류의	가. 공장건물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가공품 및 부산물, 어분, 어즙흡착사료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아. 삶는시설	고열 수증기로 원료를 삶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자. 압착시설	삶은 원료를 압착할 수 있는 동력설비를 갖출 것
	차. 고형분리시설	압착 과정에서 흘러나온 용액에서 고형물질인 침전물(어육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카. 유수분리시설	고형 분리를 거친 용액에서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설비를 갖출 것
	타. 농축시설*	고형 분리과정과 유수 분리 과정에서 분리된 용액을 농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어즙흡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파. 악취제거시설 하. 정수시설	제7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어선에 대한 특례: 제조시설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가목, 바목, 사목, 카목, 타목, 파목 시설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2. 유도단백질(가수분해·효소처리 등을 한 것을 포함)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삶는시설 바. 압착시설* 사. 고형분리시설* 아. 유수분리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파. 가수분해시설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설비를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출 것

23. 피혁가공분말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건조시설 마. 분쇄시설 바. 먼지제거시설 사. 악취제거시설 아.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차. 가수분해시설	크롬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설비를 갖출 것
24. 기타 동물성단백질류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삶는시설 마. 압착시설* 바. 고형분리시설* 사. 유수분리시설* 아. 농축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파.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하.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거. 가수분해시설*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설비를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출 것
	너. 냉동·냉장 및 가열처리시설*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관리되는 설비를 갖출 것
25. 골분, 골회, 어골분, 어골회, 패분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아. 악취제거시설 자.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26. 동물성 유지류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삶는시설 바. 압착시설 사. 고형분리시설* 아. 유수분리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파. 정수시설	제18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하. 분리시설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7. 곤충류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28. 플랑크톤류, 단세포단백질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바. 발효 · 배양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발효 · 배양시설을 갖출 것
	※ 「식품위생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환경 관련 법규에 따른 공해방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규정의 기준에 따른 시설로 갈음할 수 있음	
29. 낙농가공부산물류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아. 악취제거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자. 정수시설*	
광	30. 식염류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준함	
	31. 인산염류, 칼슘염류 및 광물질류과의 합제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물		아. 정선시설*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정선설비를 갖출 것
		자.탈불시설(인산염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원료의 탈불인산공급계약서로 대체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성		차. 불소정화시설*	탈불(脫弗) 과정에서 발생한 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탈불시설을 원료의 탈불인산공급계약서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광물질류 및 그 합제(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및 인산염류 또는 칼슘염류와 광물질류과의 합제 제외)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 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아. 농축시설 자. 용해시설 차. 여과시설 카. 결정세척시설 타. 소성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기	33. 기타 유지류	제18호의 시설기준과 같으며,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혼합성유지는 먼지제거시설을 제외할 수 있고, 불해성 지방 · 분말유지는 삶는시설 · 압착시설 · 유수분리시설 · 건조시설 · 정수시설을 각각 제외할 수 있음)	

타	34. 남은음식물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아. 건조·냉각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냉각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습식제조시설인 경우 2) 수분 14퍼센트 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분쇄 또는 정선(精選)을 말한다]하는 경우
		자. 악취제거시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갖출 것
		차. 이물질제거시설	쇠붙이·비닐·유리 등 이물질 제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카. 가열시설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돼지전용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수분 14퍼센트 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분쇄 또는 정선을 말한다)하는 경우: 가열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35. 혼합제(혼합성 단미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아. 기타*	필요시 혼합한 각각의 단미사료 시설기준을 갖출 것

※ 비고

1)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단미사료별로 위 표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수분리시설, 배양시설, 알파화시설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18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3호 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단미사료를 생산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가금류 부산물만을 원료로 사용하여 사료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 표시가 있는 시설은 단미사료 제조공정 또는 포장방법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5.1.2.>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

1.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6) 주의사항
7) 사료의 용도
8) 실제 중량 (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표시방법

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한다.
2) 사료의 형태는 사료 내용물이 처리된 형태를 표시한다.

가) 종류

(1) 가루: 곱게 가루로 만든 것
(2) 펠릿: 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
(3) 크럼블: 펠릿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목적에 맞게 분쇄·선별한 것
(4) 후레이크: 사료를 그대로 또는 증기로 쪄서 납작하게 압편

(壓片)한 것

(5) 익스투루젼(팽화):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전분을 호화(糊化)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

(6) 액상: 용액으로 된 것

(7) 그 밖의 형태: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

나) 표시 예

사료의 형태: 펠릿사료

3) 등록 성분량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로 하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한다.

4)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서대로 적는다. 다만, 식물성의 곡류, 강피류 및 박류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쓰지 아니하고 곡류·강피류·박류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며, 첨가한 단미사료 중 광물성과 보조사료는 명칭을 적고, 다음 내용을 덧붙일 수 있다.

"위 사용 원료는 공장 사정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은 첨가한 동물용의약품의 명칭(상품명은 괄호 안에 적을 수 있음)과 사용된 함량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동물용의약품 첨가사료"로 표시하며, 휴약기간(休藥期間)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일 경우에는 그 휴약기간을 명시한다.

6)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증성분표 하단에 (주의):

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가 포함된 배합사료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사료의 용도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자가 혼란을 줄 정도로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제

품의 상품명을 과대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실제 중량은 제품의 실제 중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단위는 포장 크기에 따라 "kg" 또는 "톤"으로 표시한다.

9)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은 제조(수입)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하게 표시한다.

10) 재포장 내용은 재포장 사유・날짜・중량, 재포장한 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고, 그 외에 등록성분량 등은 재포장 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다.

2.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사료의 용도

6) 주의사항

7) 실제 중량 (kg 또는 톤)

8)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10) 재포장 내용

11)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표시방법

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거래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괄호 안에 표시할 수 있다.

2)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사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품명을 적는다.

3) 삭제 <2015.1.2.>

4)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증성분표 하단에 그 내용을 (주의): 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는 "반추가축 사료로 사용금지 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돼지전용 남은음식물사료(80℃에서 30분이상 가열)는 "돼지 외에는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각각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5) 사료의 형태, 등록성분량, 사료의 용도, 실제 중량, 제조(수입) 연월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및 재포장 내용은 배합사료의 표시방법과 같다.

6) 삭제 <2015.1.2.>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12. 2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1호	지정취소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2호	지정취소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3호	시정명령
3의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7항 제3호의2	시정명령
4. 법 제25조제1항제8호·제9호·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제16호·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4호	지정취소
5.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5호	시정명령
6.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5호	시정명령
7.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5호	시정명령
8.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5호	시정명령
9.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16조 제7항제5호	지정취소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3. 23.>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제20조제3항 관련)

1.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

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사료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2. 검정의 종류 및 그 대상

가. 정밀검정 및 그 대상

정밀검정이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으로서 다음의 사료를 대상으로 한다.

1) 최초로 수입하는 사료 및 재수입하는 사료. 다만, 재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정밀검정은 종전에 정밀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처음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사료

3)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사료로서 재수입하는 같은 회사 같은 제품

4) 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료

5) 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사료

6)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자가 수입하는 사료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정 대상사료로 고시한 사료

나. 무작위표본검정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정이란 정밀검정대상을 제외한 사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으로서 다음 사료를 대상으

로 한다.

1) 정밀검정을 받았던 사료와 같은 회사 같은 제품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다만, 정제 · 가공을 거쳐야만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서류검정 및 그 대상

서류검정이란 신고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을 말하며, 다음의 사료를 대상으로 한다.

1) 연구 · 조사에 사용하는 사료

2)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사료(이 경우 국내외 공인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가목의 1)부터 6)까지의 정밀검정을 받았던 것 중 제조국 · 제조업자 · 제품명 및 제조방법이 같은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사료

4) 박람회 · 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

3. 사료의 검정방법 등

가. 수입신고에 따른 사료검정은 신고단체에서 한다. 다만, 검정장비 또는 인력부족 등으로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료시험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제2호가목7)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정대상사료로 고시한 사료에 대해서는 수입을 할 때마다 정밀검정을 실시한다.

다. 신고단체는 수입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필요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입업자는 검정수수료를 신고단체에 직접 내야 한다.

라. 신고단체의 직원이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사료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마. 둘 이상의 수입업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입하는 경

우에는 그 단체를 하나의 수입업자로 본다.

4. 시료의 채취 및 처리방법

가. 시료의 채취 및 처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한다.

나.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은 수입신고자 또는 수입물품의 관계자의 참여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검정용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10의 수거량에 따른다. 다만, 시료의 최소 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시료채취로 인한 오염 또는 검정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라. 수입신고자가 사료시험검사기관의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료에 대한 정밀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5. 시료의 검정항목 및 검정 결과의 통보

가. 신고단체의 장은 수입사료의 시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료공정 및 유해물질 등 안전성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나. 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검정은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 또는 가축에 끼치는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 및 병원성미생물 등을 검정항목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신고단체의 장은 수입신고된 사료가 정밀검정 대상인 경우에는 정밀검정을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입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수입신고업무의 전산관리

가. 신고단체의 장은 신고사항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료의 수입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기기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7. 신고 및 검정업무의 세부기준 제정 등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업무와 관련하여 세부처리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사료의 통관업무 관련부서 협조사항

가. 세관장은 제4호에 따라 신고단체에서 사료에 대한 정밀검정 또는 표본추출검정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신고단체의 시료채취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해당 보세구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7. 1.>

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실험시설 또는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제조업자가 둘 이상의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시설을 갖출 수 있다.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사료시험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료시험검사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료에 혼합가능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차광·환기시설 및 출입문이 있는 별도로 구획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배합사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만 해당한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12. 5.>

자가품질검사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사료의 검사

가. 제조·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사료공정에서 분류한 명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자가품질검사는 가축종류별로 실시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및 통관일(수입품만 해당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검사항목의 적용은 해당 사료의 보증성분·유해물질·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등 라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사료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검사시에 해당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합사료

가) 돼지 및 닭용의 아미노산성분: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사료 중 유해물질(프리믹스용은 미량광물질이 포함된 것만 해당한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 배합기의 배합정밀도(제조업자만 해당한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라)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될 수 있는 사료만 해당한다): 연간 1회 이상

마)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 함유여부(반추동물사료 또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의 혼입이 금지된 사료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바) 배합사료의 등록성분중 칼슘·인·조단백질·조지방·조섬유·조회분·ADF(산성세제불용성 섬유)·NDF(중성세제불용성 섬유)·수분: 3개월마다 1회 이상

사) 가)부터 바)까지를 제외한 성분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가) 사료의 보증성분 또는 성분규격: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사료 중 유해물질: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 함유여부(반추동물사료 또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의 혼입이 금지된 사료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를 제외한 성분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용기·포장의 검사

용기·포장의 자가품질검사는 용기·포장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용기·포장의 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그 밖의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3. 3. 23.>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2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시험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순차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4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4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 제20조의3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0조의3 제1항제3호	지정취소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3 제1항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7. 1.>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

(제23조제3항 및 제35조 관련)

구 분	장 부 명
1. 배합사료 제조업자	가. 원료수불대장(동물용의약품 수불대장 포함) 나.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와 무첨가사료 구분)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 라. 등록제품배합율표(배합율표·제품성분표·원료성분표 등)
2.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제조업자	가. 원료수불대장 나.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분석결과)
3. 수입업자	가. 제품수불대장 나. 제품판매대장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제품성분분석결과)
4. 판매업자	제품수불 및 판매대장
5. 사료시험검사기관	가. 검정대장 나. 사료검정증명서
6. 사료검정기관	가. 검정대장 나. 사료검정기록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시료의 무상수거량(제26조제1항 관련)

사료의 종류	수 거 량	비 고
배합사료	1,800g(㎖)	1. 수거량은 품목별 시료의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시료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 또는 검정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품목별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 연월일이 같은 것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3. 사료의 중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사료공정에서 정한 중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단미사료	1,800g(㎖)	
보조사료	900g(㎖)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3. 12. 28.>

행정처분기준(제3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가. 그 위반행위가 영업의 전부정지에만 해당하거나, 영업의 일부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그 위반행위가 하나 이상의 영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영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의 전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동시에 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현물검사는 시료채취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4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영업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고, 영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제1호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7.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사료공정에 위반된 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과 가축의 성장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제조품에 대한 제조일 등의 표시 누락 등 그 위반 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 작동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24조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료의 폐기·회수 등을 성실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에 사료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	영업의 전부정지 4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5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4.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등록취소	
나. 제조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4의2. 법 제8조의2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의2	등록취소		
5. 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			
가.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등록취소
6.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8호			
가.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양도 금지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양도 금지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양도 금지
나.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도록 사료를 제조한 경우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다. 등록성분의 등록치와 설계치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도록 사료를 제조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라. 성분규격 함량에 부족하거나 순도시험 중 중금속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
7.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9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0호 및 제11호			
가. 포장 및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경우로서				
1)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 또는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2) 1)을 제외한 3개 사항 이상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3) 1)을 제외한 3개 사항 미만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영업의 일부정지 2개월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
나. 포장 및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서				
1)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2) 1)을 제외한 3개 사항 이상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3) 1)을 제외한 3개 사항 미만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영업의 일부정지 2개월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
다. 사료명칭의 표시가 표시기준에 위반된 경우		영업의 일부정지 7일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라. 표시사항을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9.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2호			
가.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잔류된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시정명령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된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 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동물 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영업의 일부정지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 정지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마.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료를 사용한 경우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등록취소	
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료를 사용한 경우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사.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는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사료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등록취소	
10. 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3호 및 제14호			
가.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물질·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1. 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5호			
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등록취소	
나.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		영업의	영업의	영업의

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부정지 1개월	전부정지 2개월	전부정지 6개월
다.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12. 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6호 및 제17호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2) 검사실시비율이 검사항목의 50% 미만일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3) 검사실시비율이 검사항목의 50% 이상일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7일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7일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다. 자가품질검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사료시험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13.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8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14.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9호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4. 12. 5.>

수수료 및 검사료 등(제38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1. 제조업의 등록신청	30,000원	수입증지
2. 제조업의 등록증 재발급신청	10,000원	수입증지
3. 사료성분등록신청 및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품목당 5,000원	수입증지
4. 사료 검사 및 사료의 재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료검사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5. 자가품질검사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다만, 성분별 자가품질검사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성분별 수수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교육훈련 수수료 산출기준(제38조제3항 관련)

구 분	금 액
1. 강사 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 경비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교육생 인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교육훈련 수수료로 정한다.

※ 비고

1. 교육훈련 수수료는 교육 신청 시 현금으로 낸다.
2. 교육기관 수수료는 강사와 교육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교육훈련 수수료 산정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4. 물가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교육훈련 수수료는 인상될 수 있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4. 5.>

(　　)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사료의 종류	생산능력 (1일 생산량) 톤
	제품생산 예정일 . .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료 제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시설개요서	수수료 3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수령
신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4. 5.>

(앞쪽)

등록번호 제 호

() 사료제조업등록증

대표자: 생년월일: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생산사료의 종류:

생산능력(1일 생산량):

등록조건: 뒤쪽 참조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 제조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뒤쪽)

1. 최초 등록 연월일: 년 월 일

2. 등록조건: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4. 5.>

제조시설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료 제조시설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료제조업등록증 2. 변경 내용 및 사유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등록증 수령
신고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3. 23.>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업 등록일	생산사료
	신고사유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폐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고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4. 5.>

제조업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내용	

「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을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승계사유를 적은 서류 2.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고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2. 28.>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형태
	사료의 명칭	사료의 용도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	제품명(영문명)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사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만 해당합니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4. 그 밖에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수수료 품목당 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수령
신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12. 28.>

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수입업체명	수입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형태
	사료의 명칭	사료의 용도
	제조 국가	제품명(영문명)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사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만 해당합니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4. 그 밖에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수수료 품목당 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수령
신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4. 5.>

등록번호 제 호

사 료 성 분 등 록 증

대표자: 생년월일:

업체명: 제조업(수입업)등록번호:

소재지: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사료의 형태: 사료의 용도:

제조국가: 제품명(영문명):

사료의 성분량

성분명								
성분량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

(앞쪽)

(　　) 사료성분등록대장

1. 사료 제조업체(수입업체) 현황

제조업 (수입업) 등록번호		등록일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2. 사료성분등록 내역

등록 번호	등록일	사료 명칭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												비 고 (제조 국가 등)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등록 번호	등록일	사료 명칭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													비 고 (제조 국가 등)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2. 28.>

[]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사료성분등록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제조업체(수입업체)명	제조업(수입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능력 1일 생산량 톤	사료의 종류
	재발급신청 사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사료제조업등록증 : 10,000원 사료성분등록증 : 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재발급) 등록증 수령
신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3. 2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제조업체명		전화번호
	제조업등록번호		제조업등록 연월일
	소재지		
	관리책임자		생산능력(1일 생산량)
	생산사료	양축용 배합사료([]고기소 []젖소 []돼지 []닭 []개 []말 []면양·산양 []사슴 []오리 []칠면조 []토끼 []메추리 []꿩 []오소리 []타조), []농가 자가배합사료 원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대용유용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실험용 동물 []애완용 동물 []사육하는 동물 []어류), []단미사료, []보조사료	

「사료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업등록증 사본 2. 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3. 삭제 <2023. 3. 23.>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 5.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6. 1개월 이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실적 사본	수수료 「사료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평가·판정	→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 관리 담당기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 관리 담당기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 관리 담당기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 관리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

(앞쪽)

제 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대표자: 생년월일: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생산사료:

생산능력(1일 생산량): 톤

「사료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210㎜×297㎜ (백상지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 사항		
연월일	사항	확인 (서명 또는 인)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제조업체명		전화번호 (FAX)
	제조업등록번호		제조업등록 연월일
	소재지		
	관리책임자		생산능력(1일 생산량)
	생산사료	양축용 배합사료([]고기소 []젖소 []돼지 []닭 []개 []말 []면양·산양 []사슴 []오리 []칠면조 []토끼 []메추리 []꿩 []오소리 []타조), []농가 자가배합사료 원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대용유용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실험용 동물 []애완용 동물 []사육하는 동물 []어류), []단미사료, []보조사료	

재발급 신청사유

「사료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원본(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사료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	평가·판정	→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지정서 재발급
신청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 관리 담당기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 관리 담당기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 관리 담당기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 관리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제조업체명		전화번호
	제조업등록번호		제조업등록 연월일
	소재지		
	관리책임자		생산능력(1일 생산량)
	생산사료	양축용 배합사료([]고기소 []젖소 []돼지 []닭 []개 []말 []면양·산양 []사슴 []오리 []칠면조 []토끼 []메추리 []꿩 []오소리 []타조), []농가 자가배합사료 원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대용유용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실험용 동물 []애완용 동물 []사육하는 동물 []어류), []단미사료, []보조사료	

지 정 일	
직전 정기심사일	

「사료관리법」 제16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의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제조업등록증 사본	수수료 「사료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	→	평가·판정	→	결과 통지
신청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7. 1.>

사료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서류검정: 3일 정밀검정 또는 표본검정: 18일

신고 구분	[] 사료의 안정성 및 품질검정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서류검정	신고사료 구분	[] 단미사료 [] 보조사료 [] 배합사료
자가제조용 사용 여부	[] 자가제조용 [] 판매 또는 공급용		

신고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업종
	주소 전화번호: (FAX:)	

제조업자	제조업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업종
	소재지 전화번호: (FAX:)	

신고내용	사료의 명칭	성분등록번호	
	신고 총 수량 / 중량 / kg	HSK번호	
	제품명(영문명)	용도 및 형태	
	등록성분명 및 그 함량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제조회사명	소재지	
	수출회사명	소재지	
	수송편 종류및 수송편명	수입항	입항일 년 월 일
	보관창고 (전화번호:)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B/L)번호

「사료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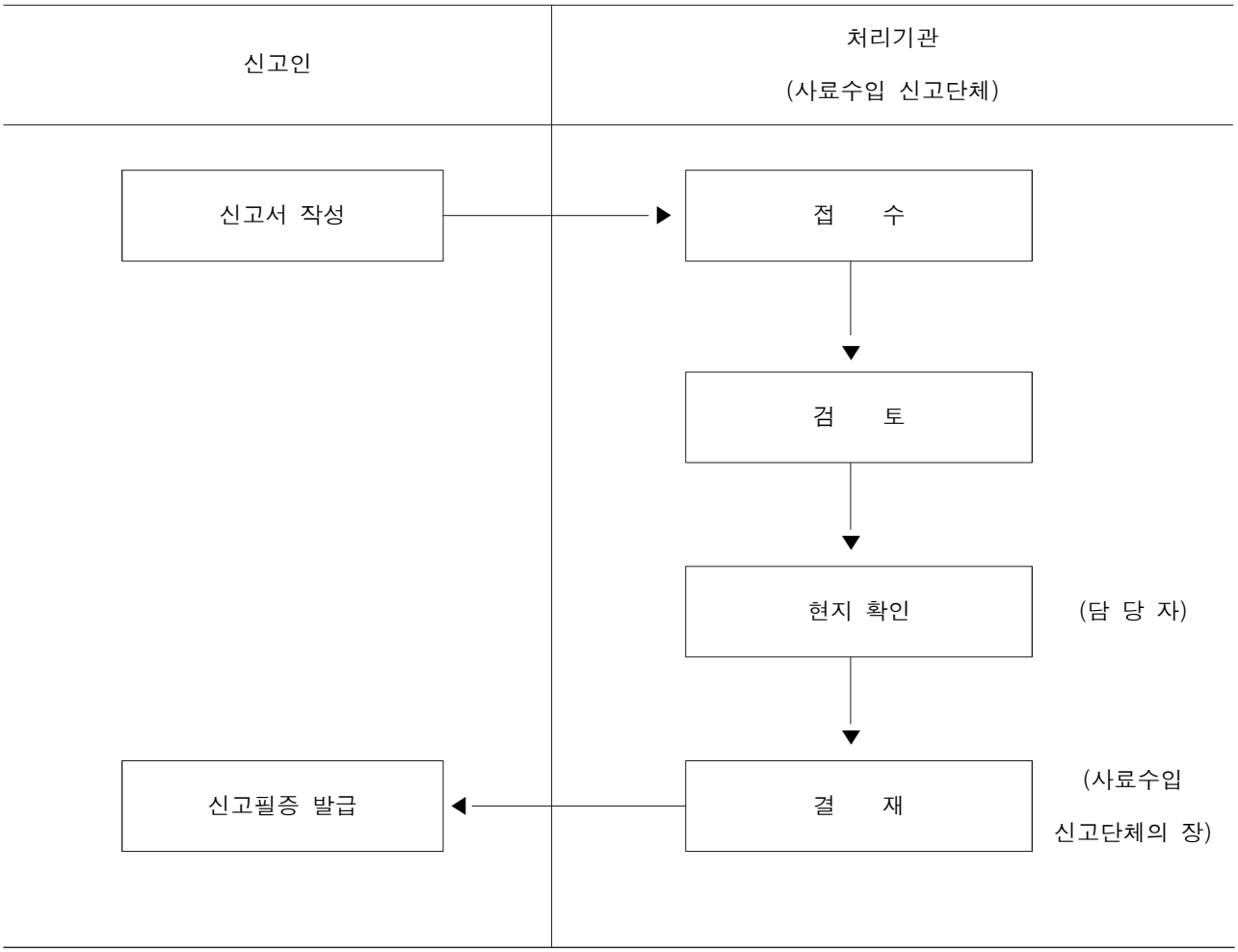
사료수입 신고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해당한다]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4. 5.>

사료수입신고필증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년 월 일
수리번호			수리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소			
사료의 명칭			제품명 (영문명)	
총 수량		(단위:)	총 중량	(단위: kg)
화물관리번호				
생산국 (제조국)			수출국	
제조회사			수출회사	
HSK 번호			검정종류	
용도			유통기한 만료	
수입신고필증 발급조건				

제 품 내 용

No.	제품명 (영문명)	화물관리번호	수량 (단위:)	중량 (단위: kg)

「사료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료수입 신고단체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4. 5.>

부 적 합 통 보 서

수신: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년 월 일
통보번호			통보 연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소			
사료의 명칭 (영문명)				
총 수량		(단위:)	총 중량	(단위: kg)
총 금액		(단위: $)	화물관리번호	
생산국 (제조국)			수출국	
제조회사				
수출회사				
입항일			보관창고	
부적합 내용				

제 품 내 용

No.	사료의 명칭 (영문명)	화물 관리번호	수량 (단위:)	중량 (단위: kg)	금액 (단위: $)

부적합 사료의 처리 방법	

「사료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료수입 신고단체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2.>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

수리번호 수리일	접수번호 접수일	사료 분류명 명칭	중량(kg) 금액($)	원산지 수출국	HSK번호 (수입일)	검정 종류 검정 성적	수입업자 제조업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년도 월분)

문서번호:

수 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 신: (인)

1. 사료의 수입신고 검정 현황

(단위: 건, kg, $)

검정종류 / 명 칭	합계			서류검정			현물검정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2. 사료의 수입신고 부적합 처분 현황

가. 품목별 부적합 현황

(단위: 건, kg, $)

검정종류 / 명 칭	합계			서류검정			현물검정		
	건 수	중 량	금 액	건 수	중 량	금 액	건 수	중 량	금 액

나. 부적합 처분 현황

접수일 처분일	접수번호 문서번호	중량(kg) 금액($)	명 칭 수입업자	사료구분 검정종류	원산지 수출국	부적합 사유 부적합 내용	비 고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7. 1.>

사 료 검 정 증 명 서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FAX()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검정번호		검 정 일	
제조업자 • 수입업자	성 명		
	주 소		

제품명	의뢰 성분								
	검정 결과								
	검정 방법								
제품명	의뢰 성분								
	검정 결과								
	검정 방법								
제품명	의뢰 성분								
	검정 결과								
	검정 방법								
제품명	의뢰 성분								
	검정 결과								
	검정 방법								
제품명	의뢰 성분								
	검정 결과								
	검정 방법								

「사료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료시험검사기관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7. 1.>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2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사료시험검사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검정성분의 범위	

「사료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처리절차

신청인	→	접 수	→	검 토	→	현지 확인	→	결 재	→	지정서 수령
신청서 작성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7. 1.>

(앞쪽)

제 호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대표자: 생년월일:

사료시험검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검정성분의 범위:

「사료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뒤쪽)

변 경 내 용		
날 짜	내 용	담당자 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4. 5.>

사료검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료내용	사료명	제조회사	
	제조일	구입일	
	구입장소	구입량	재고량
검사사항			
그 밖의 사항			

「사료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사료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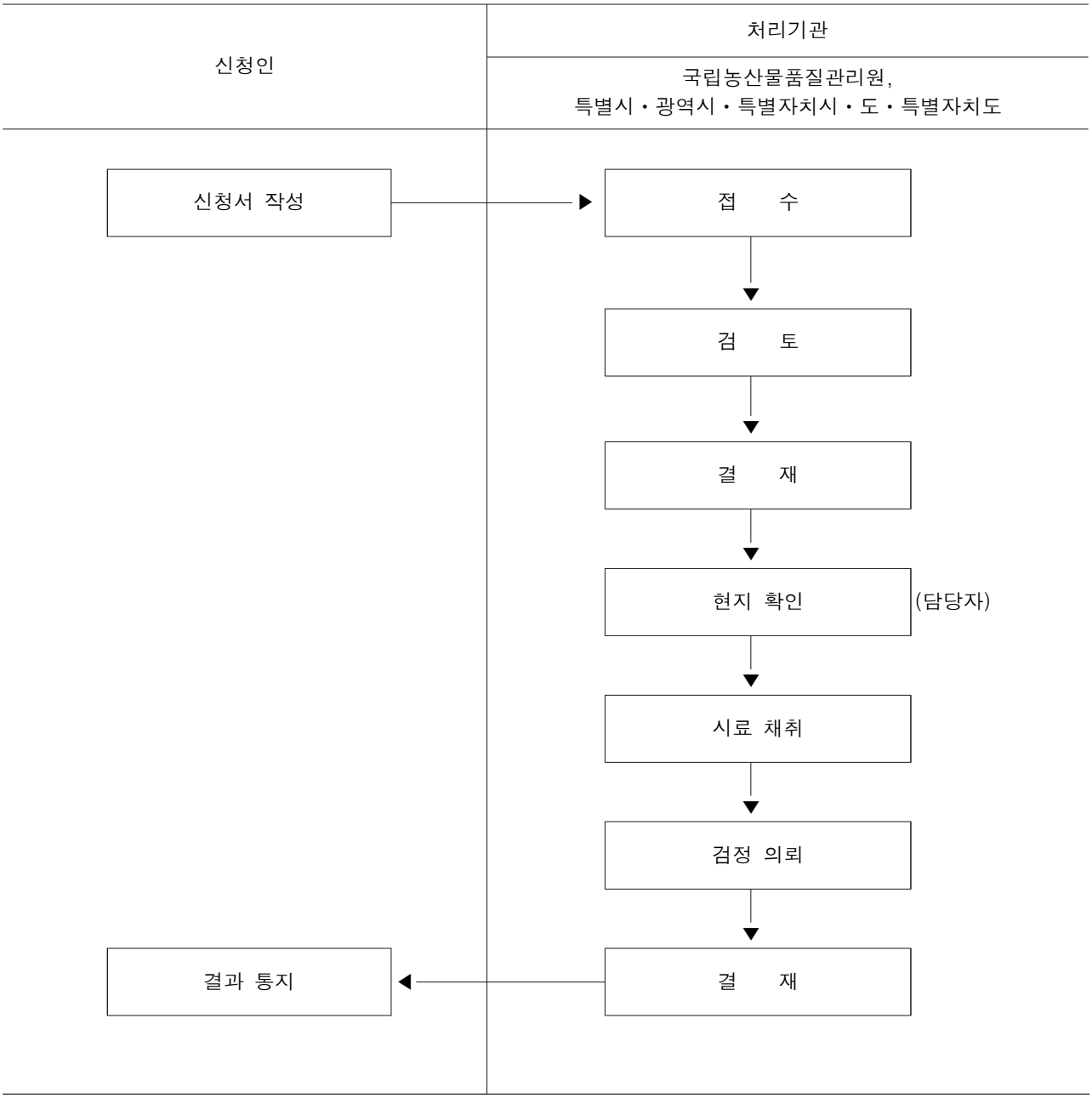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8. 26.>

출 입 · 검 사 등 기 록 부

일련번호	일시	점검목록	주요 지도·지시 내용	점검자				참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8. 26.>

수 거 증

수거 사료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성 명		상호				
	소재지						
수거 사료							
성분등록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사료의 명칭 (상품 명칭)							
사료의 제조(수입) 연월일							
사료의 등록성분	% 이상 % 이상 % 이하 % 이하						
수거 수량							
수거 사유							
수거 일시							
수거 장소							
참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료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5.1.2.>

검사수거처리대장

과장	계장	담당	일련번호	수거증번 호	제품명	규격 및 수량	수거 장소	수거 일시	검사 의뢰일	검사 결과 통보일	판정	처리 결과	검정 기관	검사 구분	수거품 처리	비 고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5.1.2.>

사료검정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사료검정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검정성분의 범위	

「사료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검정실 평면도 2. 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의 보유 내용 3. 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 확인	→	결 재	→	지정서 수령
신청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1.2.>

(앞쪽)

제 호

사료검정기관지정서

대표자: 생년월일:

사료검정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검정성분의 범위:

「사료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뒤쪽)

변 경 내 용		
날 짜	내 용	담당자 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5.1.2.>

검 정 대 장

접수 번호	신청 연월일	품명	검정 의뢰 항목	신 청 인(기 관)				검정 결과	검정인 성명	비고
				주소	성명	검정 연월일	검정 분석내용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9. 4. 5.>

사 료 검 정 기 록 서

관련:

문서번호:

수신:

시료접수일: 발신: 사료검정기관의 장 (인)

년 월 일자로 (귀하 / 귀 시·도(부)) 가 의뢰한 사료의 성분분석 및 검정결과가 아래와 같음을 회신합니다.

접수번호	시료번호 / 성분명 등	성분별 분석 결과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9. 7. 1.>

지정사항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지정번호	전화번호

변경 사항	대표자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변경 전	
		변경 후	
	사료시험검사기관 (사료검정기관)의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소 재 지	변경 전	
		변경 후	
	검정수수료	변경 전	(별첨)
		변경 후	(별첨)
	검정성분의 범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또는 사료검정기관지정서 2.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	(변경)지정서 수령
신고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2023. 3. 23.>

사료재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료내용	사료의 명칭	사료의 종류
	제조회사	제조일자
	시료채취일자	
재검사 신청사항		
재검사 신청사유		

「사료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 사료의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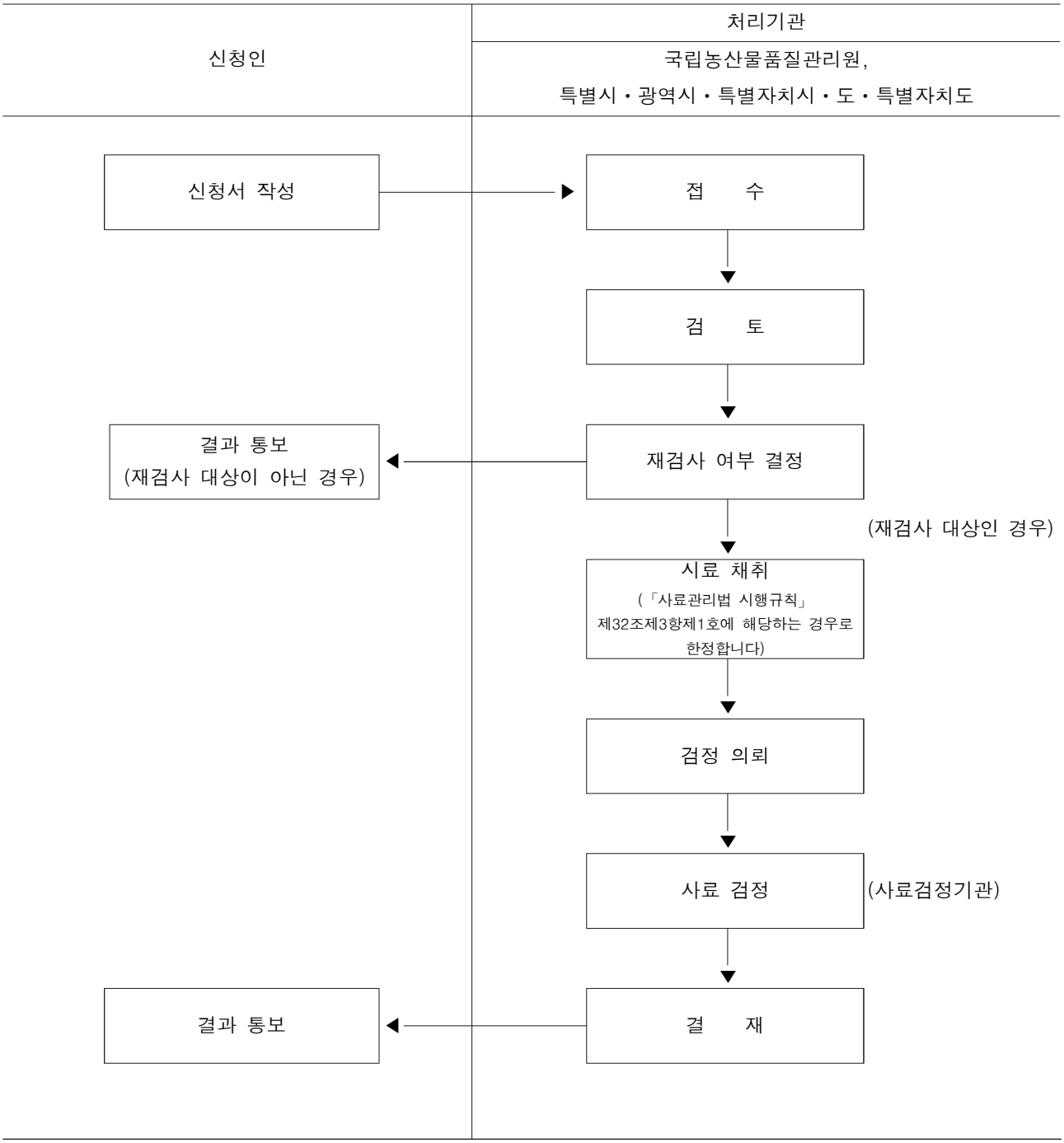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 2. 검정에 사용된 시료의 채취·분석방법 등에 관한 서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재검사 여부 결정
결과 통보
(재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재검사 대상인 경우)
시료 채취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검정 의뢰
사료 검정
(사료검정기관)
결 재
결과 통보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8. 26.>

우편번호/주소	전화() FAX()
담당부서	담당

사료검정실적보고서(년도 분기)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 신: 사료시험검사기관
사료검정기관 (인)

구 분			계	적 합	부적합	기타
합 계	해당 분기					
	해당 연도(누적)					
배합사료	소 계	해당 분기				
		해당 연도(누적)				
	가축종류별	해당 분기				
		해당 연도(누적)				
단미사료	소 계	해당 분기				
		해당 연도(누적)				
	명 칭 (대분류)	해당 분기				
		해당 연도(누적)				
보조사료	소 계	해당 분기				
		해당 연도(누적)				
	명 칭 (대분류)	해당 분기				
		해당 연도(누적)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5.1.2.>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번호	문서번호 (발송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 사항	청문일	처분 기준	처분 내용 및 기간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3. 12. 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

「사료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및 37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료종류	성분등록번호	대표자(생년월일)	소재지(업체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및 조치 내용	처분기간	처분 및 조치 대상 품목(제품명)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한(기간)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3. 3. 23.>

(앞쪽)

제 호

사료검사원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85㎜[PET-G 카드(연노란색) 또는 백상지(150g/㎡)]

(뒤쪽)

소속/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사료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사료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사료관리법」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시설과 서류 등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